



인도네시아 Tax Info 2021 년 8 월호

간주 세금계산서 업데이트

최근 인니 부가세 규정 업데이트로 인해 다수의 신규 문서 유형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문서가 여러 규정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2021 년 7 월 27 일에 국세청(DGT)은 간주 세금계산서 통합 문서 목록을 제공하는 규정 번호 PER-16/PJ/2021(PER-16)을 발행했다. PER-16 은 PER-13/PJ/2019 를 대체한다 (Tax Info 2019 년 7 월호 참조).

PER-16 에 따라 2021 년 8 월 1 일부터 다음 문서는 부가세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 a. 밀가루 공급에 대하여 Bulog(Badan Urusan Logistik 의 약자로, 한국의 농수 산물 유통공사와 유사)/Dolog 에 의하여 발행된 공급 지시서(Surat PerintahPenyerahan Barang);

In this issue:

1. [Update on consolidated list of documents equivalent to VAT invoices](#)
2. [VAT incentive on sales of certain properties extended](#)
3. [Government to bear VAT payable on rental costs of retail tenants](#)

Customs Focus:

4. [Import duty borne by the government on import of goods and raw materials for industries affected by COVID-19](#)

- b. 전화 요금 영수증;
- c. 전화 크레딧 판매에 대한 지불 영수증 및/또는 토큰 및/또는 바우처 배포와 관련된 수수료 또는 요금 (신규);
- d. 전기 요금 영수증;
- e. 과세 대상 상품 및/또는 과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식수 회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 f. 국내 항공 용역에 대하여 발급된 티켓과 항공료 영수증;
- g. 항만 용역에 대하여 발급된 용역 제공 인보이스;
- h. 증권 중개 회사의 과세 대상 용역 제공에 대한 거래 증명서;
- i. 과세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은행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 j. 담배 제품 excise tape 주문에 사용되는 문서 (CK-1 문서);
- k. 경매인을 통한 과세물품 인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서(Surat Setoran Pajak(SSP))(경매 회의록 첨부됨);
- l. 물품 수출 신고서(Pemberitahuan Ekspor Barang)(특정 증빙 서류 첨부됨);
- m. 송장이 반드시 첨부된 용역 수출 신고서 (Pemberitahuan Ekspor Jasa Kena Pajak) 및/또는 무체 재화 수출 신고서 (Pemberitahuan Barang Kena Pajak Tidak Berwujud);
- n. 물품 수입 신고서 (Pemberitahuan Impor Barang(PIB))(특정 증빙 서류 첨부됨);
- o. 관세청(DGCE)의 수입 부가세 과소납부 징수를 위한 물품 수입 신고서(특정 증빙 서류 첨부됨);
- p. 수입세, 소비세 및/또는 소포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DGCE 에서 발행한 세액 확정 통지서 (특정 증빙 서류 첨부됨) (신규);
- q. 역외 과세 대상 무형 상품 및/또는 역외 과세 대상 서비스 사용에 대한 부가세 자진 신고 납부서;
- r. 역외 과세 대상 무형 재화 및/또는 역외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penyerahan melalui saluran elektronik (PMSE))에 대한 부가세 징수 증명서 (신규);
- s. 과세 상품 및/또는 과세 서비스 인도와 관련하여 부가세 납세 사업자가 (Pengusaha Kena Pajak(PKP)) 보세 구역에서 상품을 반출하기 위한 문서 (신규);
- t. 비거주 납세자가 소유한 과세 대상 물품을 보세 구역에서 관세지역내 기타 장소(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TLDDP))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를 위한 부가가치세 납부서(특정 증빙 서류 첨부됨) (신규);
- u. 과세 대상 상품 및/또는 과세 대상 서비스를 자유 무역 지역 및 자유 무역항에서 TLDDP 로 반출 및/또는 인도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를 위한 부가가치세 납부서(특정 증빙 서류 첨부됨);

The DGT issued PER-16 to consolidate and update the list of all documents equivalent to VAT invoices.

- v. 과세 대상 물품의 특별경제구역 수입에 필요한 특별 경제 구역 세관 신고서 (특정 증빙 서류 첨부됨) (신규);
- w. SEZ 의 사업자가 TLDDP 내의 고객에게 과세 대상 상품 및/또는 과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납부서 (특정 증빙 서류 첨부됨)(신규);
- x. SEZ 의 사업자가 TLDDP 내의 고객에게 특정 비과세 상품 반출 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납부서 (신규); 또한
- y. 매입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한 세액 확정 통지서 (특정 증빙 서류 첨부됨) (신규).

또한 PER-16 은 매입부가세 공제를 위해 부가세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간주되기 위해 해당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정보의 세부 목록을 업데이트한다.

특정 부동산 판매에 대한 부가세 인센티브 연장

2021 년 7 월 30 일 재무부장관(MoF)은 특정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대한 VAT 인센티브의 기간과 범위를 연장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배경

Covid-19 기간 동안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2021 년 3 월 1 일에 MoF 는 부가세 납세사업자가 개인 주택 소유자에게 특정 주거용 부동산(육지 주택 및 거주 단위) 판매 시 정부의 10% 부가세 전부 또는 일부 부담에 관한 규정 번호 21/PMK.010/2021(PMK-21)을 공표했으며 이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를 보전한다 (Tax Info 2021 년 4 월호 참조). PMK-21 에 따른 인센티브는 2021 년 8 월 31 일에 만료된다. 재무부 장관은 부동산 부문의 국가 구매력 유지를 위해 인센티브가 지속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PMK-21 을 대체하기 위해 2021 년 7 월 30 일에 규정 번호 103/PMK.010/2021(PMK-103)을 발행했다.

PMK-103 개요

PMK-103 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PMK-21 과 동일한다. 즉, 부동산 판매 가격이 IDR 20 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부가세 100%를 부담하고 판매 가격이 IDR 20 억에서 IDR 50 억 사이인 경우 정부가 부가세 50%를 부담한다. PMK-103 은 PMK-21 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2021 년 12 월

PMK-103 extends the VAT incentive on the purchase of certain residential properties to December 2021.

31 일까지 연장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 자격과 관련된 추가 세부 정보도 제공한다:

- 주상 주택에는 상점과 사무실로 사용되는 주택이 포함됨;
- 인도 날짜는 매매공증서(akta jual beli) 서명 날짜 또는 매매대금완납약정(perjanjian pengikatan jual beli lunas) 서명 일을 기준으로 결정됨;
- 부동산 인도가 2021 년 8 월 1 일에서 12 월 31 일 사이에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 등기이전서 (Berita Acara Serah Terima (BAST))는 농업부 공간 레이아웃(MAASL)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되어야 함;
- 부동산은 MAASL 에서 얻은 주택 식별 코드가 있어야 함;
- 인센티브는 인니 납세자번호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또는 주민등록번호(Nomor Identitas Kependudukan (NIK))를 등록한 인니 거주자와 NPWP 를 취득한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적용됨; 및
- 부가가치세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부동산 인도의 경우 부가세 납세사업자는 2 개의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하나는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부가세 부분에 대해 거래 코드 "01"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부담하는 부가세 부분에 대해 거래 코드 "07"을 사용하는 것임.

PMK-103 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부동산이 PMK-21 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고 PMK-103 이 공표되기 전에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 본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인센티브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납세사업자는 2021 년 8 월 31 일까지 관련 BAST 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MAASL 에 제출해야 함;
- 적격 부동산이 2021 년 7 월 30 일까지 인도되지 않았으나 부가세납세사업자가 이미 대금을 수령한 경우 PMK-103 을 따르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2021 년 7 월 31 일 이전에 발행된 부가세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필요가 없음.

정부의 소매 임차인의 임대 비용에 대한 부가세 부담

COVID-19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소매 부문은 정부가 여러 차례 부과한 공공 활동에 대한 제한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소매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 년 7 월 30 일에 재무부장관은 해당 부문에 대한 정부 부담 부가세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규정 번호 102/PMK.010/2021(PMK-102)을 공표했다.

The government will fully bear the 10% VAT payable by retail tenants on rental of rooms and buildings for the period from August to October 2021.

PMK-102 에 따라 정부는 소매임차인(세입자)이 객실 및 건물 임차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10% 부가세를 전액 부담한다. 소매임차인은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전달하는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로 정의된다. 한편, 객실 및 건물은 단독 상점 또는 아울렛이거나 쇼핑몰, 백화점, 아파트, 호텔, 병원, 교육 시설, 대중 교통 시설, 사무 시설 또는 재래 시장에 위치한 곳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인센티브는 2021 년 8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21 년 8 월부터 10 월까지의 임대 기간에 적용된다. 서비스 요금은 렌탈 요금과 함께 청구되는지 또는 별도로 청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인센티브를 활용하려면 임대인은 "PPN Ditanggung Pemerintah Eksekusi PMK No. 102/PMK.010/2021", "객실 또는 건물 임대"라는 문구가 포함된 거래 코드 "07"을 사용하여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부가세 세금계산서는 해당 부가세 세금계산서가 생성된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보고되어야 함.

정부가 부담한 부가세는 세무당국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상환해야 합니다:

- 임대 부동산이 인센티브 자격이 없는 경우;
- 임대 기간이 인센티브 기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및/또는
- 객실 및 건물 임대에 대한 부가세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관세 중심

COVID-19 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한 재화 및 원자재 수입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는 수입세

COVID-19 영향으로 인한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MoF 는 COVID-19 의 영향을 받는 특정 산업 부문에 정부가 부담하는 수입세(BM DTP) 형태의 재정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하는 규정 번호 68/PMK.010/21(PMK-68)을 발행했다.

PMK-68 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MK-68 regulates government-borne import duties as fiscal incentive for certain industrial sectors affected by COVID-19.

정부가 부담하는 수입세에 관한 규정

1. BM DTP 는 특정 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회사의 재화 및 자재 수입에 대해 부여될 수 있다 (특정 산업 부문 목록은 PMK-68 에 첨부됨).
2. 다음과 같은 특정 산업 부문에서 수입되는 상품 및 자재는 BM DTP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다:
 - a.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재화 및 자재;
 - b. 국내에서 생산되었지만 요구되는 사양을 충족하지 못한 재화 및 자재; 또는
 - c. 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산업상 필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물품으로서 관계 부처의 고시에서 정하는 재화 및 자재.
3. 다음과 같은 재화 및 자재는 특정 산업 부문에서 수입되는 재화 및 자재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 a. 수입세가 0% 부과되는 재화 및 자재;
 - b. 국제협정에 따라 수입세가 0% 부과되는 재화 및 자재;
 - c. 반덤핑 수입세, 임시 반덤핑 수입세, 산업 보호 수입세, 임시 산업 보호 수입세, 상계 수입세 또는 보복 수입세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자재; 또는
 - d. 보세 창고에 보관할 재화 및 자재.
4. 위의 3(b)항에 언급된 재화 및 자재는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 산업 회사에서 생산된 경우 제외되며 수입을 수행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5. BM DTP 는 관세 지역 외부에서 TLDDP 로의 재화 및 자재 반출을 위해 특정 산업 부문의 회사에 부여될 수 있다:
 - a. 보세 물류센터 (Pusat Logistik Berikat 또는 PLB);
 - b. 보세 창고 (Gudang Berikat 또는 GB);
 - c. 보세 구역 (Kawasan Berikat 또는 KB); 또는
 - d. 특별 경제구역 (SEZ).상기 회사는 특히 서비스 생산 활동을 위한 항공기 수리, 정비 및/또는 유지보수 부문에 종사하는 회사를 말한다.
6. 다음과 같은 재화는 PLB, GB, KB 및 SEZ 에서 항공기 수리 및/또는 유지보수 (수리, 정비 및 유지보수) 산업 부문을 위한 TLDDP 로의 재화 반출에 대한 BM DTP 를 받는 재화에 포함된다.
 - a. 수리 또는 유지보수한 재화의 부분이 된 재화; 또는
 - b. 항공기 수리 또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재화.

BM DTP 등록 절차

1. BM DTP 를 획득하기 위해 수입자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a. BM DTP 받을 자격이 있는 재화 및 자재에 대한 세관 신고서(PIB) 보고 오류가 없음 (해당 오류 발생 가정시 과거 1 년간 미지급금 발생 가능성이 있음 및/또는);
 - b. 수입세, 관세 및 소비세 미지급금이 없음.
신청서는 DGCE 의 Director of Financial Facilities 을 통해 재무부에 제출된다.
2. 회사는 DGCE 포털, 즉 인도네시아 국가 단일 창(INSW) 시스템을 통해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DGCE 에 BM DTP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 및 문서화

기업의 BM DTP 구현은 재무부 장관령으로 정하는 BM DTP 총액과 재화의 수량 및 종류에 따라 이루어진다. 재화 및 자재의 양 또는 PIB 및 해당 재무부 장관령의 BM DTP 총액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BM DTP 가 부여될 수 없으며 수입자는 불일치에 부과된 수입세를 정산할 의무가 있다.

제재

1. BM DTP 부여에 관한 관련 재무부 장관령을 획득한 재화 및 자재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 a. 국내 소비 목적으로 재화 및/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함;
 - b. 관련 회사의 지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함; 및
 - c.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수입자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무부 장관령이 취소되고 회사는 수입세를 납부해야 한다.

PMK-68 은 2021 년 6 월 22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발효된다.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Business Tax

Melisa Himawan

Tax & Legal Leader

mehimawan@deloitte.com

Business Tax and M&A

John Lauwrenz

jlauwrenz@deloitte.com

Transfer Pricing

Roy David Kiantiong

rkiantiong@deloitte.com

Business Tax

Ali Mardi Djohardi

alimardi@deloitte.com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atna Lie

ratnalie@deloitte.com

Transfer Pricing

Balim

bbalim@deloitte.com

Business Tax and International Tax

Cindy Sukiman

csukiman@deloitte.com

Business Tax, Business Process Solutions and Gi3

Roy Sidharta Tedja

roytedja@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hivaji Das

shivdas@deloitte.com

Business Tax

Dionisius Damijanto

ddamijanto@deloitte.com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urmanto

tturmanto@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rene Atmawijaya

iatmawijaya@deloitte.com

Business Tax

Heru Supriyanto

hupriyanto@deloitte.com

Business Tax and Tax Management Consulting

Yan Hardyana

yhardyana@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Sri Juliarti Hariani

shariani@deloitte.com

Business Tax

Reggy Widodo

rwidodo@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andra Suhenda

ssuhenda@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